

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10. 8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8. 10. 9
- 다. 상 정 일 자 : 2008. 10. 28 (제1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
제4차 도시위원회 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교통행정과장 김용호)

- 가.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
- 나. 종전 시·도에서만 구성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시·구(군) 모두 구성토록 2008년 1월 1일부터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3. 관련법령

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

4. 주요내용

- 가.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기능(안 제2조)
- 나.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3조)
- 다.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임기 등(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)

5. 검토의견

본 조례 제정 건은

-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역별 교통 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
- 종전 시·도에서만 구성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시·구(군) 모두 구성토록 2008년 1월 1일자로 법률이 개정 시행 되었고, 지난 9월초 국토해양부와 부산광역시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한 바 있어
- 금번 조례 제정은 그 중요성에 비해 조금 때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되나, 본 제정조례 제3조(구성) 제2항에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므로

위 조례 제정 건은 일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7. 토 론 요 지 : 없 음

8. 심 사 결 과 : 수정의결